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. 8. 26 선고 2014가단322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5. 8. 12.

판결 선고 2015. 8. 26.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제천시 D 대 23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7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7㎡에 관하여 2011. 4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도면 표시 1, 7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7㎡에 관하여 2008. 8. 3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B는 제천시 D 대 23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천시 E 대 152㎡(이하 '이 사건 인접토지'라 한다) 중 102/152 지분의 소유자이다(이 사건 인접토지 중 나머지 50/102 지분은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데, 원고와 피고 B는 각자 소유한 건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).

나. 원고의 형인 피고 C은 1988. 8. 3.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02/152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의 외벽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인식하여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7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7㎡(이하 '이 사건 점유부분'이라 한다)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토지경계를 잘못 알고 계속하여 점유해 왔다.

다. 원고는 2011. 4. 27. 피고 C으로부터 제천시 E 대 152㎡ 중 102/152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1. 4. 29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이 사건 점유부분도 피고 C으로부터 점유승계를 받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피고 B에 대하여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증인 F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피고 C에 대하여 :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간주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1. 4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C이 1988. 8. 3.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02/152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이래로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계를 잘못 알고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8. 8. 3.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.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08. 8. 3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또한,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1. 4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,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08. 8. 3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판 단

살피건대, 피고 C이 1988. 8. 3.경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2008. 8. 3.경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 C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
그런데, 을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시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B가 1996.5.경 한국국토정보공사(구 대한지적공사) 제천시사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또 다른 토지인 제천시 G(위 토지의 또 다른 면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맞닿아있다)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신청을 하여,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시사 소속 지적기사H이 1996. 5. 30. 경계측량을 하여 측량결과도를 작성한 사실, 위 측량결과도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경계가 침범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, 그런데, 위 측량결과도에는 위 측량대상 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의 자격으로,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,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, 그 후 피고 B는 1996. 6.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시사에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현황측량을 신청하여 위 제천시사 소속 지적기사 H이 1996. 6. 11. 현황측량을 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1996. 5. 30. 경계측량 당시에 원고가 입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(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시사가 원고의 서명, 날인을 위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), 원고와

당시 소유자였던 피고 C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 C도 그 무렵에는 경계를 침범한 사실(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속한다는 사실)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 C의 자주점유 추정은 적어도 1996. 5. 30.경에는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홍

별 지 도 면

